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,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함(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).
-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제3호, 제16조제2항 신설).
-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·보호시설 등의 상담원·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라면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때에는 성년에 이르렀더라도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 안 부칙 제2조는 “이 법 시행 전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”라고만 규정하고 있어, 그 대상자가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도 미성년이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,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같은 취지에서 본칙규정인 안 제16조제2항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¹⁾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16조(보호시설의 입소기간) ② 제1항 제1호 단서,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,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<u>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</u>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<u>여성가족부령</u>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	제16조(보호시설의 입소기간) ② 제1항 제1호 단서,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,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<u>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해자가</u>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<u>성평등가족부령</u>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1)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안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대상시설인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만이 입소할 수 있는 유형의 보호시설이어서, 수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부칙 제2조(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에게도</u> 적용한다.	부칙 제2조(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<u>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</u> 적용한다.

-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, 자세한 내용은 주서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